

인권 이론과 실천 제22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 활동의
현황과 과제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 활동의 현황과 과제*

양 천 수**

I. 서 론

영남대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MOU를 체결하여 인권교육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개원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 이는 무엇보다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에 설치된 인권교육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에 대한민국 인권상(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²⁾ 이외에도 영남대학교에는 다수의 인권관련기구가 존재한다. 양성평등센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³⁾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교육대학이나 일반 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 등에서도 인권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영남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및 연구활동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투고일자 : 2017. 12. 1. 심사일자 : 2017. 12. 11. 게재확정일자 : 2017. 12. 18.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1) 이에 관해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 (영남대학교, 2007) 참고.

2) 이에 관해서는 “영남대 법학연구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교수신문』 (2011. 12. 7. 10:27) 참고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7>).

3) 영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역시 인권관련기구로 파악할 수 있다.

II.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교육연구 활동

영남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이다. 둘째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가 추진하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이다. 셋째는 그밖에 영남대학교 전체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먼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체계

(1) 교육과정 전체 체계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125개 교과목, 총 327학점을 편성하고 있다.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⁴⁾ 첫째는 이론과목 내부에 존재하는 체계이고, 둘째는 실무과목 내부에 존재하는 체계이며, 셋째는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이고, 넷째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이다.

1) 이론과목의 체계

첫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마련하고 있는 이론과목은 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법을 예로 보면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과 같은 기본이론교과목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민사법 전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1학년 2학기에는 ‘물권법세미나’와 ‘채권법세미나’를 개설함으로써 민사법에 대한 이론지식을 심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2학년 이후에는 ‘민사판례연구’나 ‘민사법종합연습’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실제

4) 이때 말하는 체계는 현대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체계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의미의 체계, 즉 논리적인 의미연관관계를 뜻한다. 현대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체계 개념에 관해서는 양천수,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단국대) 제39권 제4호(2015. 12), 99-141쪽 참고.

민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민사법에 대한 이론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실무과목의 체계

둘째, 실무과목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다.⁵⁾ 우선 실무과목은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실무필수과목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론’, ‘모의재판’, ‘실무실습’,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 ‘공법실무’를 말한다. 이러한 실무필수과목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기본과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선택과목은 실무필수과목을 통해 습득된 실무능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경찰실무’, ‘민사재판실무’, ‘가족법실무’, ‘민사집행법실무’, ‘헌법소송실무’가 이러한 실무선택과목에 해당한다.

3)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사이의 체계

셋째,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과목은 이론교과목과 실무교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교과목과 실무교과목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개설된다. 민사법을 예로 보면, 1학년의 경우에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과 같은 이론교과목을 통해 민사법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정보조사’와 같은 실무교과목을 통해 이론교과목에서 배운 민사법의 이론적 지식들이 어떻게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민사법의 기초이론 습득이 끝나면 ‘물권법세미나’, ‘채권법세미나’, ‘민사판례연구’ 등과 같은 각종 사례연습교과목을 통해 민사법의 이론이 어떻게 실제 법적 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체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민사재판실무’ 교과목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어떻게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지식을 결합시켜 실제 민사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민사법종합연습’과 같은 이론-실무융합형 교과목에서는 그 이전까지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법적 분쟁에 가까운 기록형 사례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종합연습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실제 법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법

5) 다만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을 구분할 것인지, 실무과목의 본질적인 개념징표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실제로 특정한 교과목이 이론과목인지, 아니면 실무과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처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교과목과 실무교과목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전체 교과목을 체계화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4) 필수교과목의 체계

넷째,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 그 자체에서도 체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목은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필수교과목은 다시 5개의 ‘법정필수교과목’과 14개의 ‘비법정필수교과목’으로 구성된다. 필수교과목은 기본적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교과목으로 편성된다. 그 이유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야말로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법률지식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수교과목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전문적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5) 선택교과목의 체계

나아가 선택교과목은 기초법학 교과목, 특성화 교과목,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법학 교과목은 실정법학에 대한 기초적·원리적·반성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기초적·원리적·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특히 창의적인 법적 사고가 필요하다. 기초법학 교과목은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특성화 교과목인 공익·인권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공익과 인권을 실현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일반선택 교과목은 일종의 전문법 교과목으로서 현대사회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등장하는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지적재산권법’이나 ‘국제경제법’, ‘금융법’, ‘조세법’, ‘노동법’, ‘파산법’, ‘국제군축법’, ‘한국국제거래법’, ‘회생법’ 등이 이러한 전문법 교과목에 해당한다.

6) ‘전문법’에 관해서는 양친수, “私法 영역에서 등장하는 전문법화 경향: 도산법을 예로 본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 사회』 제33호(2007. 12), 111-135쪽 참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이 모두 전문법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 인권교과목의 체계

이러한 선택과목은 그 자체 편성과과정에서도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특성화 교과목인 인권법을 예로 보면, 먼저 1학년에서는 ‘인권기초론’ 교과목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운다. 다음으로 2학년에서는 ‘노동인권과 차별’ 등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각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를 배운다. 마지막으로 3학년에서는 ‘공익인권소송 실무’ 등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실제 공익인권 관련 분쟁에서 어떻게 공익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무적인 차원에서 배운다.

(2)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 간의 균형 및 개설순서의 체계성

1) 기본원칙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편성하는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개설순서 역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먼저 교과과정의 기본체계는 “기초⇒심화⇒실무⇒통합”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계에서는 법학의 기초소양과 기본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심화단계에서는 기본법학의 세부지식이나 전문법학의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단계에서 획득한 법학지식을 종적·횡적으로 확장 및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실무단계에서는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례해결 능력, 법적 추론 및 논증능력, 법문서 작성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통합단계에서는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뿐만 아니라, 각 전문영역의 전문법 지식을 종합적·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를 모두 이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성화 영역에 속하는 인권교과목 및 공익교과목 역시 마찬가지로 체계화되어 있다.

2)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체계성

이러한 체계적 흐름에 따라 법률기본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체계,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법영역에 ‘헌법기초이론’ 및 ‘행정법1’ 등 7개 과목, 형사법영역에 ‘형법총론일반’ 및 ‘형사소송법1’ 등 5개 과목, 민사법영역에 ‘민법총칙’, ‘상법1’ 등 11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법률기본과목의 이론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심화하기 위해 31개의 심화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기본과목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실무과목 개설의 체계성

실무과목은 이원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먼저 법정필수실무과목인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론’, ‘모의재판’, ‘실무실습’은 기초과목으로서 개설 및 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법실무’,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 교과목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구성된 법률기본과목을 실무적으로 심화하는 과목으로 개설 및 운용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실무과목은 법률기본과목의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해 습득된 법률지식을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제법적 지식, 문제해결능력, 논증능력 및 기록작성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법실무’,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 등과 같은 9개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습득된 실무능력은 ‘헌법종합연습’, ‘행정법종합연습’, ‘민사법종합연습’, ‘상법종합연습’, ‘형법종합연습’, ‘형사소송법종합연습’과 같은 통합과목을 통해 심화된다. 이 같은 통합과목 안에서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관점과 실무적 지식 및 관점, 문제해결능력, 논증능력, 기록작성능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실제 법률전문가와 유사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게 된다.

(3) 필수과목 개설의 체계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필수과목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5개의 필수실무과목을 포함하여 법률기본과목 11개, 실무과목 8개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⁷⁾ 각 교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법령이 필수과목으로 강제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5개의 필수실무과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우리 법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육법의 기초과목에 해당하기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개별기본권론’, ‘행정법1’, ‘물권법’, ‘채권법’, ‘물권법세미나’, ‘채권

7)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법세미나, ‘상법1’, ‘형법총론일반’,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필수과목은 기본육법에 속하는 법학의 기본적 이론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전문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본적인 실무능력과 기본 법영역의 이론지식을 결합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목이기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공법실무’,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필수과목들은 각각 공법, 민사법, 형사법 영역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125개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체 125개의 교과목 중에서 19개의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은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실무과목 개설의 체계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는 실무과목은 다음과 같은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실무과목은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개설된다. 실무필수과목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론’, ‘모의재판’, ‘실무실습’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공법실무’,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를 말한다. 실무선택과목은 재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과목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필수과목은 최대한 억제하고, 실무선택과목을 폭넓게 편성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저학년층 대상으로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요구하는 기초실무필수과목을 배치함으로써 아직 실체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1학기에 개설한다. ‘법문서작성론’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기본법률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3학기에 개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문서작성론’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1’과 ‘민사소송법’을 동시에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모의재판’이나 ‘실무실습’ 교과목은 실제 법적 분쟁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4학기에 개설한다. 이를 통해 법률기본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실무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성공적으로 ‘모의재판’이나 ‘실무

실습'과 같은 종합적인 실무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기본법학과목과 기초법학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실무과목에 대한 수강적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1학기·2학기에는 법률기본과목을 개설하고, 3학기에는 법률심화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법률가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4학기, 5학기, 6학기에 걸쳐 다양한 실무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무선택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선수강요건'으로서 실체법과 소송법에 대한 법률기본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5) 기초법학과목 개설의 체계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법학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먼저 기초법학과목은 우리말로 진행되는 교과목과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기초법학과목은 특정학기에 편중되지 않고 전 학기에 걸쳐 개설된다. 이를테면 1학기에는 '법학방법론', 2학기에는 'Legal Research and Writing'과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3학기에는 '법철학' 및 '법이론과 판례', 4학기에는 '법사회학과 판례' 및 '법사상사', 5학기에는 'American Law', 6학기에는 'Legal Negotiations', 'American Legal History' 및 'Advanced Legal Writing'이 개설된다. 나아가 기초법학과목은 내적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개설된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법학방법론'이 개설되어 실정법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적·방법론적 성찰능력을 배우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3학기에는 기초법학과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철학'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철학' 교과목은 단순히 철학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대한 철학적 분석방법을 다루는 것을 지향하기에 실정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제로 한다. 그 때문에 3학기에 개설한다. 이어서 4학기에는 '법사회학과 판례'를 개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초법학적 지식과 사유능력을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자연스럽게 기초법학적 사유능력과 실정법적 지식 그리고 실무적인 분쟁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6) 융·결합과목 개설의 체계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결합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고 있다.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9개의 융·결합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보다 더욱 많은 수의 교과목을 융·결합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다만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재처럼 9개의 융·결합과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융·결합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융합 및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실체법적 지식과 절차법적 지식이 융합 및 결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법종합연습’ 과목에서는 민법에 관한 지식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융합 및 결합된다. 둘째,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이 융합 및 결합된다. 이를테면 ‘형사법실무’ 과목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이 융합 및 결합된다.

그러나 융·결합과목이 이른바 기본법률과목 중심으로 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성화영역에 속하는 ‘인권과 유교사회’ 및 ‘소비자법’을 융·결합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인권과 유교사회’는 인권영역, ‘소비자법’은 공익영역을 대변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는 총 9개의 융·결합과목 중에서 7개의 교과목은 변호사가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관한 것이다. 이 과목들은 실무에 종사하는 현직 변호사에게 요청되는 실제 분쟁해결능력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때문에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체법적 지식과 절차법적 지식 그리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어떻게 상호 결합시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또한 수업시간에 실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이 직접 체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인권과 유교사회’ 및 ‘소비자법’에서는 인권 및 공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가르친다. 이뿐만 아니라 인권 및 공익 관련 분쟁은 단순히 법적 지식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법 이외의 지식, 가령 인문사회과학적 지식도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융·결합과목을 통해서 법 이외의 다양한 지식과 관점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 운영의 체계성

1)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의 교육내용상 연계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는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은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실무필수과목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성이다. 실무필수과목인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실무실습’, ‘모의재판’,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 ‘공법실무’ 사이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연계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성이다. 이러한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이 강제하는 5개의 기초 실무필수과목은 실무, 즉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덕성, 법률조사능력, 법문서작성 능력, 고객대응능력, 소송수행능력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실체법에 관한 이론적 지식은 충분히 교육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각 법 영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각 법 영역의 고유한 측면 및 실체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관한 부분은 5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실무필수과목, 즉 ‘민사법실무’, ‘형사법실무’, ‘공법실무’를 통해 내용적으로 보완이 된다.

둘째,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 사이에도 내용적인 면에서 연계성이 존재한다. 실무필수과목인 ‘민사법실무’나 ‘형사법실무’, ‘공법실무’가 5개의 기초 실무필수과목에서는 다소 부족한 실체법에 관한 지식을 보완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 과목만으로는 실체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각 법 영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역할은 실무선택과목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민사법종합연습’이나 ‘형사재판실무’ 등과 같은 실무선택과목이 실무필수과목에서 다소 부족하게 다루는 실체법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각 법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각 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실제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률가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2) 교육과정상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 개설학기의 체계성

나아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과정에서 마련하는 실무선택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의 개설학기는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첫째는 실무필수과목의 개설학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체계성이다. 둘째는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의 개설학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체계성이다.

첫째, 기초실무과목인 5개의 실무필수과목은 1학기에서 4학기에 개설하도록 하고 있

다. 이를테면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는 1학기, ‘법문서작성론’은 3학기, ‘모의재판’과 ‘실무실습’은 4학기에 개설된다. 그 뒤를 이어 이러한 기초실무과목을 보완하는 ‘민사법실무’와 ‘형사법실무’가 5학기, ‘공법실무’가 6학기에 개설된다. 이를 통해 실무필수과목 개설학기의 내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실무필수과목, 특히 기초 실무필수과목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4학기, 5학기, 6학기에 걸쳐 다양한 실무선택과목이 개설된다. 이를 통해 실무필수과목과 실무선택과목의 개설학기 사이에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선택과목을 통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각 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실제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교육과정 체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인권기초론’, ‘공익론’ 등을 포함한 총 19개의 특성화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관련 교과목은 개설순서와 내용의 측면에서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 개설순서의 체계성

먼저 개설순서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인권영역의 경우에는 우선 1학기에 ‘인권기초론’ 교과목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습득하게 된다. 이어서 2학기에는 영어교과목인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를 통해 인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인권법을 배우게 된다. 다음으로 3학기에는 ‘노동인권과 차별’, ‘인권과 유교사회’, 4학기에는 ‘국제인도법’, 5학기에는 ‘인권법세미나’, ‘환경인권세미나’, ‘European Human Rights Seminar’, 6학기에는 ‘형사절차와 인권세미나’ 등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습득한 인권에 대한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각 전문적인 인권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인권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학기 이후에는 ‘인권법세미나’ 같이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합형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인권전문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분야 특성화 교과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설순서가 체계화된다. 우선 1학년에 공익분야 기초교과목인 ‘공익론’을 개설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한

후, 2학년에 ‘공정거래법’, ‘농업법’, ‘소비자법’, ‘환경법’ 등 개별공익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한다. 이어서 3학년에 ‘공익인권클리닉’ 등 실무 중심의 통합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통해 공익 분야에 대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내용의 체계성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우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인권의 전문화, 대중화, 세계화, 지역화라는 기본 목표에 부합하도록 특성화 과목을 개설한다. 또한 공익·인권 교과목은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기초이론 습득 ⇒ 각 전문영역별 심화학습 ⇒ 통합적 사고 배양 ⇒ 실무능력 학습>의 순으로 개설된다. 예를 들어, ‘공익론’과 ‘인권기초론’을 통해 공익과 인권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어서 ‘공정거래법’, ‘농업법’, ‘소비자법’, ‘노동인권과 차별’, ‘인권과 유교사회’ 등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각 전문영역에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심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법세미나’, ‘환경인권세미나’, ‘European Human Rights Seminar’, ‘법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공익과 인권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클리닉’과 ‘공익인권소송실무’를 통해 공익과 인권에 관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평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공익과 인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과목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인권을 전공한 전임교원을 충원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둘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변호사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권교과목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입학정원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성된 교과목 수는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신청하던 당시에 입학정원 120명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인데,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0명에 불과하고 전임교원 역시 이에 맞추어 충원 및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학생 및 전임교원의 수에 비해 전체 교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인권교과목을 모두 개설 및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전임교원들의 상대적인 무관심 역시 인권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기타 인권교육활동

(1) 공익·인권 관련 집단지도

이외에도 특성화 전임교원으로 인정된 교원들이 매학기 공익·인권 관련 집단지도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이를 매학기 실질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략 매 학기마다 2회 정도 인권과 관련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이는 인권교육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2) 공익인권학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익인권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인권학회의 회원들은 대략 10여명 안팎으로 주로 1-2학년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 매 학기 네 번 정도의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데, 이를 통해 공익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함께 영화보기 또는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III.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인권교육연구 활동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꽤 많은 수의 인권교과목을 편성 및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영남대학교의 인권교육연구 활동은 인권교육연구센터가 중심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조직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에 마련되어 있다. 센터장 1인과 유급전임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이 맡는다. 현재는 필자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다.⁸⁾ 한편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인권의 세계화·지역화·전문화·대중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⁹⁾

2. 인권저널 발간

인권교육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인권저널을 발간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인권저널인 『인권이론과 실천』을 발간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한 번에 보통 10여편 정도의 논문이 실렸는데, 4-5편은 교수의 논문이 그리고 5-6편은 인권실무가의 논문이 실렸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한 번에 5편 정도의 논문이 실리고 있다.

3. 인권학술세미나

인권교육연구센터는 매 학기마다 한 번 이상 인권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는 하였다. 인권학술세미나에서는 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권활동가를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섭외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 및 연구의 대중화 및 지역화를 꾀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권학술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4. 명사초청특강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인권과 관련된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의원, 조국 교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명사초청특강의 연사로 초청되었다. 성격상 주로 정치적인 명사들이 초청된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정치적·재정적 상황으로 이러한 명사초청특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8) 다만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필자의 연구년으로 인해 다른 분이 센터장직을 수행하였다.

9)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목표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이론과 실천』 제2호(2007. 10), 87-96쪽 참고.

5. 기타

그밖에도 인권교육연구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인권단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협력하여 인권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모색하고 있다. 인권교육연구센터는 특히 지난 2010-2011년 사이에 인권학술세미나, 명사초청특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성과(2010년-2011년)

주 제	일 시	장 소
죽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010. 1. 13.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한일노동법 포럼: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010. 4. 3.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2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2010. 4. 9.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국제인권법의 동향	2010. 4. 30.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국제화시대 변호사의 역할	2010. 5. 7.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10. 5. 28.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한국사회와 인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특강	2010. 6. 1.	인문관 강당
인권조례운동과 인권교육은 어디에 서있는가?	2010. 10. 4.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인권의 공법적 보장	2010. 10. 14.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
정보인권 특강	2011. 4. 27.	법학전문대학원 203호
인권과 법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	2011. 5. 25.	법학전문대학원 203호
검찰개혁을 위한 Talk	2011. 5. 27.	대구 MBC 7층 대강당
인권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11. 11. 5.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워크숍	2011. 11. 30.-12. 1.	경주 교육문화회관

IV. 기타 영남대학교의 인권교육연구 활동

1. 인권교과목 개설 및 운용

그밖에 영남대학교의 다른 학부나 일반대학원 등에서 인권교과목을 개설해 운용한다. 예를 들어, 기초교육대학에서는 ‘인권과 법’ 교과목을 개설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정치행정대학에서는 ‘인권과 정치’, 일반대학원에서는 ‘교육과 인권’ 및 ‘영유아인권: 이론과 실제’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2. 양성평등센터

영남대학교는 인권교육연구센터 이외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인권 중에서 특히 젠더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룬다. 양성평등센터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젠더 관련 인권교육

먼저 양성평등센터는 젠더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특강 형식으로 실시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과 같은 특강을 실시한다. 이러한 특강은 매년 실시하는데, 강의내용을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강연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조치

나아가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대학당국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일종의 행정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V. 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영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연구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인권교육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재정지원 강화

현재 영남대학교, 특히 인권교육연구센터는 출범 초기와 비교할 때 인권교육연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정지원의 약화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교가 그런 것처럼, 영남대학교 역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연구센터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유급연구원 인건비와 인권저널 발간비로 충당되기에 사실상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 최근 들어 인권 학술세미나나 명사초청특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인권교육연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변호사시험 합격률 압박 해소

다음으로 특히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압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극심한 합격률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이 없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눈에 띄만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상과제로 설정되고 있는 만큼 인권 관련 교과목을 실질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

3.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임교원들이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인권 관련 교과목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시험 관련 교과목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성

(1) 필요성

마지막으로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영남대학교에는 인권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인권교육연구센터와 양성평등센터만이 있을 뿐이다.¹⁰⁾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우처럼 인권교육연구 및 행정조사 기능까지 겸비한 공식적인 인권센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¹¹⁾ 그렇지만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대학들에 서울대의 인권센터와 같은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연구 및 행정조사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설치방법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평등센터처럼 독자적인 기구를 총장직속으로 또는 본부 산하에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이 소요된다. 현재 강력한 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인권관련기구를 조직적·기능적으로 통폐합하여 인권기구로 만드는 것이다.¹²⁾ 이를테면 양성평등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이를 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10) 물론 학생상담센터 역시 넓은 의미의 인권관련기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관해서는 원경주,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대학, 인권을 만나다: 2017년 제3차 한국인권교육포럼·2017년 제2차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자료집』(2017. 12. 14), 55쪽 아래 참고.

12) 연세대학교가 이러한 방안에 따라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같은 인권관련기구를 인권센터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기능

기존의 양성평등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이를 인권센터로 통폐합하여 개원하는 경우 이러한 인권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과 인권교육 기능이 그것이다. 그리고 인권연구에 관해서는 일종의 조정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상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행정조사 기능과 인권교육 기능만을 부여하는 모델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양성평등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인권교육 및 연구기능만을 부여하는 모델이다.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에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행정조사 기능 및 인권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부여하는 모델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이러한 모델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세 번째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행정조사 기능 및 인권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롭게 설립되는 인권센터가 인권연구 기능까지 흡수하면, 기존에 각 학부나 전공 중심으로 존재하는 인권 관련 연구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새로 설립될 영남대학교 인권센터에는 일차적으로는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행정조사 기능과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육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권센터에 인권교육연구위원회를 마련하여 여기에 영남대학교 전체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통합과학적 성격이 강한 인권법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¹³⁾

13)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 제 2호(2007. 10), 117-129쪽 참고.